

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

이 법은 특정도서(特定島嶼)의 다양한 자연생태계,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이 법은 국토의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어업자원보호법

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(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)으로 한다.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제한위반
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규칙

이 법은 「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」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독도 관광지

쫓대바위

독도의 동도(東島)와 서도(西島) 사이, 서도 쪽에 더 가까운 바다에 있는 바위섬이다. 마치 쫓대를 세워 놓은 듯한 형상이라 하여 쫓대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



넙덕바위

서도에 속한 바위로는
넙덕바위 : 넓이가 넓어 '넙적하다'는 뜻



군함바위

군함바위 : 군함의 형상을 한 바위



큰가제바위

큰가제바위 : 부근에 강치가 많이 출현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.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'가제'라는 말로도 불려졌는데, 이름 그대로 강치들이 머물렀던 곳



감사합니다.

